거래관련 유의사항 안내

- 보험사고 발생 시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신청은 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[은행법 제 52조의 2 불공정영업행위] 등과 관련하여 구속행위 규제제도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며 자발적 의사에 따라 본 상품을 가입함을 확인합니다.
- *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중소기업 및 그 대표자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(7등급 이하)인 경우, 은행법 상 구속행위 여부에 따라 아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- 1. 수신상품 신규거래
 - 2. 수신상품 신규 이후 1개월 이내 대출거래(본인명의 또는 중소기업 대표자인 경우 해당 기업)
- o 해당상품은 은행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며 보험계약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.
- ㅇ 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 은행거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.
-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(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함)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**3영업일**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 다만, **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,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**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하당상품은 보험사 고객센터,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해지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자동 동의하게 됩니다.
- 계약 체결 후 보험업감독규정 제 4-35조에 따라 귀하가 청약하신 날로부터 최대 7영업일이내에 고객만족센터에서 해피콜을 통해 고객님이 알려주신 전화번호로 확인할 예정입니다.
 회사가 전화 시도 후 부재중인 경우 또는 모바일 해피콜 발생 후 회신되지 않을 경우우편 또는 컴퓨터, 핸드폰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